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10 | 2023.11.20. (2023.11.13~11.1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11.13~11.19)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국민 일상 편의 제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①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기업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실증특례 추진, ② 민간 중심의 정밀지도 데이터,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 구축, ③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범위를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 ④ '24년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샌드박스) 선제 추진, ⑤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기반(가칭 One-윈도우)를 구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등은 민당정(民黨政)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투명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한편, 그간의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경향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기업결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그리고 지난 한주동안 발의(제출)된 주요 법률안으로 정부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제출하였으며,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55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등이 있습니다.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예결위 조정소위의 심사 활동이 본격화될 예정이며, 각 상임위별로는 소관 법률안들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서는 위원장 선임이 상정되며, 관계부처로부터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기획재정부) 6
- 복수의결권주식제도 시행(중소벤처기업부) 11
-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과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민당정(民黨政)협의회 개최(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13
-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TF 출범(금융감독원) 14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6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7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1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8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공정거래위원회) 1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2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 21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환경부) 22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3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4
-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2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7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55인) 27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 28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2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5인)	30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의원 등 10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3인)	3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3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32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5인)	3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33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3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	3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35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35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36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36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37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등 11인)	3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39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40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4인)	4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13~11.19) [바로가기](#)

- [기업지배구조] 주주경영권분쟁팀 뉴스레터 - 3. 주주총회 당일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위임장 심사 관련 쟁점
-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된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제조자 표시가 있어도 상표권자가 제조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유럽사법재판소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발표 - 국민 일상 편의 제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핵심과제 추진	2023-11-15
-------	---	------------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금번 대책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됨

우선,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함

아울러,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저작권 지침(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기존 ‘인공지능 허브’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연계(매칭)를 지원함

생명(바이오)·건강(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함. 또한,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건보공단-민간 보험사 등이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함

또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25~)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의 의료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본인정보 제공시스템’ API)하여, 민간기업의 혁신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기반(인프라, 가칭 One-윈도우)을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프라)을 강화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율주행·로봇

-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본격 운영(’23.11~, 9개 기업 연내 승인 추진)

- 민간 중심의 원본·정밀지도 데이터 거래 환경 조성 지원*

* (현행)정부 주도 정밀도로지도(차도) 구축 → (개선)민간 주도 정밀지도(차도+인도) 거래

② 인공지능(AI)

- AI 학습데이터 수집·활용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23.12)

- AI 학습데이터 중개소* 구축(‘AI 허브’ 확대 + 데이터 수요-공급 매칭 지원)

* (현행)정부 주도 데이터 구축 + 무료 개방 → (개선)민간 주도 AI 학습데이터 거래

-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데이터 약 3만건을 AI 기업에 제공(’24~, 금감원), 의료 합성데이터*(MRI1만장, CT2만, X-ray10.5만 등) 최초 생성·개방 (’23.12, AI 허브)

* 원본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되, 개인식별 가능 정보를 제거하여 재생성한 데이터

③ 바이오·헬스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 확대(웰니스 항목 한정→질병 유사 항목, ’25), 유전자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구체화**

* Direct-To-Consumer: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타액 샘플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업체에 검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 염기서열·메타 데이터 등 세부적 가명처리 기준 마련으로 활용성 제고

- 가명데이터 활용 연구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재심사 부담 경감*

* ①최초 승인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연구는 추가 IRB 면제, ②데이터 활용목적·기간 등 일부 변경은 신속 재심의 절차 신설 (7일 이내, IRB 가이드라인 반영, ~’23.12)

- 건강보험 가명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개방·반출* (’24.上)

* (예) 건보공단·보험사 공동으로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증진 요인 분석, 검진결과에 따른 주요질병 발생 가능성 등 연구 추진

④ 마이데이터

- 의료·통신 등 민생 밀접 분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선도 서비스* 추진, 의료 마이데이터 규제샌드박스 실험특례 추진(’24~)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 선도서비스 선정·지원(’24년안, 25억원)

-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하여,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24, ‘본인정보 제공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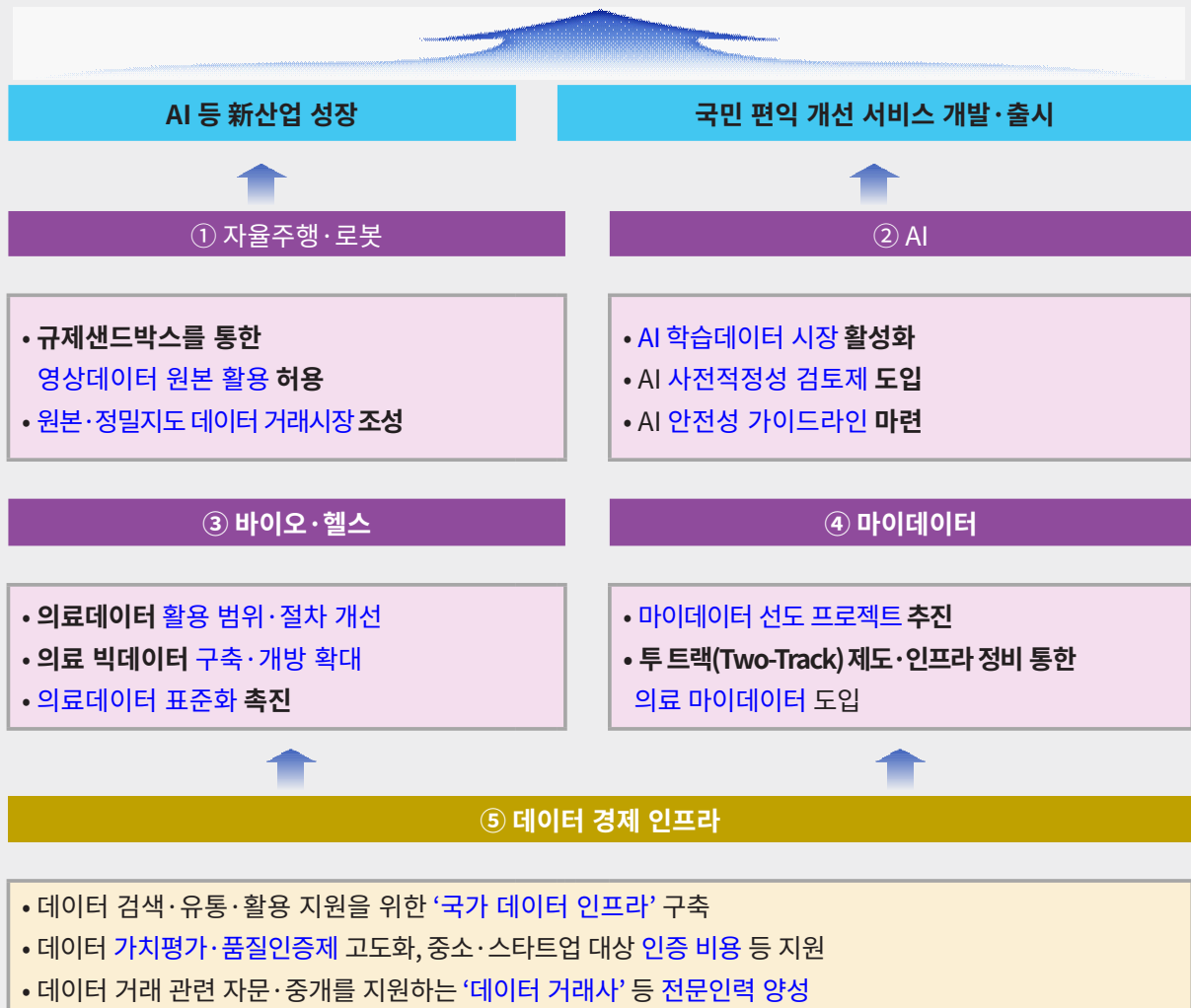
* (건보공단)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검진정보, 진료내용 조회정보, 영유아 건강검진정보, 암 건강검진정보, (심평원) 투약이력 조회정보, (질병청) 국가예방접종 이력정보

⑤ 데이터 경제 인프라

- 통합 인프라(가칭 One-윈도우) 구축, 표준계약서 및 가격산정 가이드라인 수립, 중소·스타트업 대상 가치평가·품질인증 비용* 지원 (’24년안, 18억)

< 추진 방향 >

국민과 기업이 편리해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 향후 추진계획 >

① 자율주행·로봇 분야

정책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23.11~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산업부
▪ 원본·정밀지도 데이터 거래시장 조성 * 정밀지도 데이터 플랫폼 마련 및 데이터 표준 마련	'24~	국토부

② 인공지능 분야

정책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공익적 AI 개발 지원 *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AI 서비스 개발 지원	'24	금융위 개인정보위
의료 AI 학습용 합성데이터 생성 및 제공	'23.12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AI 학습데이터 시장 활성화 *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 구축, 가치평가·품질인증 가이드라인 마련, 분쟁 조정 지원	'24	과기정통부 문체부
저작권 제도 정비 * 「AI-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23.12	문체부
AI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24~	개인정보위
AI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보호 6대 핵심 가이드라인」 마련	'23.12~	개인정보위

③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공공데이터 반출 *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 지침(건보공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 운영 지침(심평원)」 개정	'24.上	복지부
유전자 검사 개선 * DTC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 확대, 미성년자 대상 인증 절차 간소화 (「DTC 가이드라인」 개정)	'24~	복지부
유전체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마련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23.12	개인정보위 복지부
비정형데이터 기준 개선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23.12~	개인정보위 복지부
IRB 절차 개선 * 「IRB 가이드라인」 개정	'23.12	복지부
의료기관 법적책임 명확화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23.12	개인정보위 복지부
업계 수요 반영 데이터셋 구축	'23.12	복지부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24~	복지부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제공 지침 개정 *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 지침(건보공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업무 운영 지침(심평원)」 개정	'23.12~	복지부
데이터 결합 서비스 절차 간소화	'24	복지부
EMR 인증 확산 * 의료기관 질 평가제도와 EMR 인증 연계	'24	복지부

④ 마이데이터 분야

정책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마이데이터 전송 대상 기준 마련 및 단계적 확대 * 「개인정보 보호법」 하위법령 마련	'24~	개인정보위 관계부처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 추진 *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 공모 실시 및 서비스 선정	'24~	개인정보위
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교류 활성화	'24~	복지부
산업·연구목적 의료 데이터 활용 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 상 전송항목 및 수신자 기준 수립,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실증 프로젝트 추진,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정보 민간기업 제공	'24~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행안부 복지부 질병청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 마련 추진 * 「신용정보법」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	'24~	금융위

⑤ 데이터 경제 인프라

정책 과제	추진 시기	소관부처
데이터 유통·활용 지원 * 「(가칭) One-윈도우」 구축	'24~	과기정통부
데이터 가치평가·품질인증 비용 지원	'24~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안심구역,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운영	'24~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주식제도 시행-복수의결권 제도 시행에 앞서 투자·청년·고용 등
현안 의견 공유

2023-11-13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1월 17일에 본격 시행되는 바,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됨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규 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함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개요 내용으로는

①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 및 절차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요건 확인 요령>

① 비상장 벤처기업일 것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을 것(비상장)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것
▼	
② 창업주 요건을 갖출 것 (공동창업주)	-벤처기업의 발기인(설립자)일 것 -발행 시점에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 -실형이 끝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아닐 것 -마지막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3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일 것
▼	
③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	-창업 이후 누적 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
▼	
④ 마지막 투자에 의해 창업주 의결권이 하락할 것	-마지막 투자가 지분투자(equity)일 것 -마지막 투자로 인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

항 목	내 용
① 발행자격 및 보유자격	
발행자격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
보유자격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등기이사이면서 최대주주)

② 발행요건

발행요건 (투자요건)	누적 100억 & 마지막 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분희석 우려*시 * 창업주 지분이 30%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	--

③ 발행한도

존속기간	발행 후 최대 10년 한도로 유효기간을 정관에 규정
의결권 수	1주당 최대 10개 한도로 기업이 정관에 규정

④ 절차·방법

정관개정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¾동의) 로 정관 개정
발행결정	가중된 특별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 신주 발행 * 단, '총주주 동의'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가능

②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행사 제한, 보고의무 등

항 목	내 용
-----	-----

① 보통주 전환요건

일신전속	상속 양도, 이사 사임시 보통주 전환
상장후 보통주 전환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하되 3년간 유예기간 부여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
기 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시 보통주식 발행으로 간주

②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

행사제한 (1주 1의결권)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책임의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해산의 결의 시 1주 1의결권 행사
-------------------	---

③ 특례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특례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 *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면서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
공개매수 및 주식 대량보유 보고 특례	복수의결권 발행 벤처기업은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및 대량보유 보고서 의결권 기준 으로 적용

④ 발행의 보고 및 고시

발행보고	복수의결권 발행내용 및 중요사항 변경시 중기부에 보고
정관공시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내역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
관보고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명단, 중요사항 변경 등을 관보에 고시

⑤ 허위발행죄 및 과태료

위반행위 인지 · 신고	중기부는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 누구든지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중기부에 신고
과태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 허위작성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비치 및 공시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안)」과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민당정(民黨政)협의회 개최

2023-11-16

금융위원회 등은 11월 16일 민당정(民黨政)협의회를 통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과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금번 논의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은 최종안이 아닌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국회 논의, 추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해외 증시와 달리 국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며, 최근 글로벌 IB의 적발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고, 개인투자자 중심의 문제제기도 지속되어 왔음

* [韓('23.1~10월)]코스피55%,코스닥80% / [美]20%내외 추산(블룸버그), [日]18%수준

금융당국은 지난 11월 5일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내년 상반기('24.6월말)까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를 결정하였음. 이번 민당정협의 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불법 공매도 근절'의 원점으로 삼아,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향적 제도개선 추진기로 하였음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①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

< 대차·대주 제도 개선 이후 비교 >

		상환기간		담보비율	
		현행	개선	현행	개선
대차	기간 제약 없음	→	90일, 연장	현금 105%	현금 105%
	대여자 요구시 상환		대여자 요구시 상환	주식 135% ↑	주식 135% ↑
대주	90일, 연장		90일, 연장	현금 120% ↑	현금 105%
	중도상환요구X (90일 보장, 개인만 참여可)		중도상환요구X (90일 보장, 개인만 참여可)*	주식 120% ↑	코스피200 120%* (기타 주식: 대차 수준)

• ____ : 개인에 대한 대주서비스가 기관 대차보다 더 유리한 부분

② 무차입 공매도 사전방지

-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

	매매반영	잔고부족시 차입 승인	대차반영
시스템	매매내역 반영	대차전담부서에 대차·공매도승인 요청	대차계약 확정 · 상환 반영
예방 장치	[1단계] 잔고 초과 공매도주문 방지	[2단계] 대차 전 공매도주문 방지	[3단계] 잔고 초과 공매도주문 방지

< 내부통제기준 반영 필요사항(안) >

- 착오 방지를 포함하여 대차 체결일시, 잔고정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준 마련
- 매 영업일 대차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 점검
- 잔고 산정 관련 기초자료를 조사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 · 관리

- 증권사에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확인의무 부과
- 전산시스템 · 내부통제기준 및 확인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가능성 추가 검토

③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 글로벌 IB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엄벌

④ 공매도 공시 확대

-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 예외거래 세부통계 공개

금융감독원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 지원을 위한 TF 출범

2023-11-15

인공지능(AI) 기술발달, 회계와 IT기술의 융합 등으로 기업의 재무보고와 외부감사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회계법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외부감사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디지털 기술이 감사목적에 맞게 활용될 경우 회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험이 높은 부문에 감사노력을 집중하는 등의 효과 기대가 있음

<기존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의 특징>

<기존 회계감사와 디지털 감사의 특징> 기존 감사(Traditional Audit)	▶	디지털감사(Digital Audit)
E-mail을 통한 정보교환		플랫폼을 통해 감사대상 회사시스템에서 직접 자료 추출
리스크 분석 능력 미미		알고리즘을 활용해 리스크가 높은 항목을 추출·감사역량 집중
표본 감사		대용량 데이터 전수 검토 실시
수작업을 통한 점검		단순반복업무 자동수행(Robotic Platform)

다만, 국내 활용수준은 초기단계*로 아직까지 기업을 포함한 외부감사 관련자들의 디지털 감사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신뢰성 검증절차 확립, 데이터 보안 문제 및 비용부담이슈 등에 대한 검토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Big4 등 일부 회계법인은 글로벌에서 개발한 디지털 감사기술을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한 업무자동화툴 등을 사용중이나, 외부감사에 직접적인 사용률은 낮은 상황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신뢰성 검증절차 확립, 데이터 보안 문제 및 비용부담이슈 등에 대한 검토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순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함*

* PCAOB(미국), FRC(영국) 등 해외감독기구도 T/F를 구성하고 이슈분석·감독방침 검토 중

주요 논의내용으로는

① 현황·영향분석 및 감독이슈 점검

- **(현황 및 영향분석)** 국내 회계법인이 현재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현황 및 글로벌회계법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사례 분석,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신뢰성 검증)** 외부감사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디지털 기술의 알고리즘과 해당 알고리즘의 적합성 검증 방법·절차 검토
- **(대용량 데이터 공유 및 보안)** 디지털 감사에 필요한 기업정보의 감사인 공유 시스템 마련 및 이에 따른 데이터 보안 방안
- **(감사절차 변화)** 감사증거 및 감사 과정 등에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회계감사기준 및 품질관리기준 등 개정 필요사항 검토

* 수집하는 감사증거의 형태, 감사증거 검증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범위 등

②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지원 방안 마련

- **(회계법인간 격차 해소)** 대형과 중소형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기술 활용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중소형 회계법인 지원방안 등 마련
- **(전문인력)** 디지털 감사기술을 이해·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방안
- **(비용부담측면)** 디지털 감사툴의 개발·유지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방법 등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1-16 시행 (다만,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지명경쟁입찰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종합 심사 대응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 (제23조제1항제2호)

-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공사의 추정가격 기준의 상한을, 건설공사는 '3억원'에서 '4억원'로 상향하되,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로 상향하고, 건설공사 외의 공사는 '1억원'에서 '1억 6천만원'로 상향하여 지명경쟁입찰 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

② 수의계약 대상 확대 (제26조제1항제2호타목 신설)

-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발굴 용역으로서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를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

③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용역의 범위 조정 (제4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술 관련 용역의 추정가격 기준의 하한을,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25억원'에서 '4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여 해당 추정가격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④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같음하는 과징금 부과 사유 확대 (제76조의2제1항)

-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등의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및 입찰참가나 계약체결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1-17 시행

실외이동로봇의 안전한 운영을 담보하고 보도 등에서의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412호, 2023. 5. 16. 공포, 11. 17. 시행)됨

이에 따라,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를 지능형 로봇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으로 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며,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1조의2 신설,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삭제, 제24조의2 신설, 제24조의3 신설, 제31조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1-17 시행

실외이동로봇의 안전한 운영을 담보하고 보도 등에서의 통행을 허용하기 위하여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도 등에서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법률 제19412호, 2023. 5. 16. 공포, 11.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71호, 2023. 11. 16. 공포, 11. 17.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운행안전인증의 기준과 절차,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 기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2 및 별표 1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안전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② 운행안전인증의 기준 (제7조의4 신설)

-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적재물을 포함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최대 질량을 500킬로그램 이하로, 실외이동로봇의 이동 시의 최대 속도를 시속 15킬로미터 이하로 정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③ 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7조의5 신설)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모델별로 운행안전인증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리도록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리도록 함

④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7조의9 및 별표 4 신설)

- 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명령,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⑤ 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제7조의10 신설)

-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사망한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당한 경우 1인당 3천만원 등으로 정하고,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1-20 시행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밀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3년 후였던 비사업용 경형·소형의 승합·화물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2년 후였던 사업용 경형·소형의 승합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는 한편,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첨가제 검사기관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검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별표 25, 별표 34의2 제1호가목, 별표 34의2 제2호가목 등)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1-15 시행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등록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임대사업자의 국세 및 지방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4조제9항 신설, 제5조제6항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11-17 시행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주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1주마다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해당 기업의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9416호, 2023. 5. 16. 공포, 11. 1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852호, 2023. 11. 7. 공포, 11.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때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4조의6 신설,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의2제1항, 별지 제4호 등)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11-16 시행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부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문자메시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가맹희망자가 보다 편리하게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금 예치 의무 등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1차 조정과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등의 사유에 따른 2차 조정을 거쳐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2차 조정 상한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위법 상태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고 과징금 산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6조제1항, 제13조의5제1항, 별표 1 제2호나목 등)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1.13. ~12.13.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4.3.22. 시행)됨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투명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확률형 아이템 표시사항 및 표시의무 대상 규정 (안 제19조)

-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 아이템 등 주요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른 공급확률정보 등 표시사항 규정
-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 제공 기간이 한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
- ‘확률형 아이템에 적용되는 공급 확률에 따른 각각의 구매·개봉·강화·합성 등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 및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개봉·강화·합성 횟수 등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인 경우 해당 방식의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규정
-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을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로 하되, 아케이드 게임장, 등급분류 제외 게임물, 영세게임사 등 대상 제외 게임물 규정

②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관련 규정 신설 (안 별표3)

-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백분율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하도록 규정
-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물·선전물 등 표시의무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표시방법 규정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http://www.mtc.go.kr) (전화: 044-203-2443, 팩스: 044-203-3465)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3.11.15.
~12.26.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한 및 강제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주민지원기금의 부적절한 집행 방지 등을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설치의무자가 지자체에 부지 분양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안 제3조의2)**
 -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2회 이상 분양공고(준공 이후로 한정)를 했으나 분양되지 않은 경우
- ② **지자체 주민지원기금 조성·운용 실적 보고 및 지원사업 명확화 (안 제26조제6항, 별표 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영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지자체 조례로 주민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제한
- ③ **설치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 신설 (안 제34조의2)**
 - 시정명령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 완료시 이행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
- ④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마련 (안 제34조의3)**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확보 또는 연간 폐기물발생량 5만톤 이상인 경우 3천만원, 연간 폐기물발생량 5만톤 미만인 경우 2천만원으로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착공한 이후에는 공정률을 고려한 감면규정 마련(50% 이내)
-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절차 등 (안 제34조의4)**
 - 부과 전에 사전통지, 이행 완료시 신규부과 중지 및 기 부과 건은 징수, 체납시 국세체납 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
- ⑥ **환경부장관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위임 (안 제35조제2항)**
 - 설치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업무

※ 문의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64, 팩스: 044-201-7376)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2023.11.15.
~12.26.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이행기한 및 강제규정 등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부지의 분양대행 요청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안 제2조)**
 - 지자체에 분양 요청시 별지서식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는 1개월 이내 수용여부를 회신하되, 1회에 한해 회신기간을 연장 가능
 - 지자체는 분양 요청을 수용한 이후에도 미분양 등의 경우에 분양대행 종료 가능
- ② **설치의무 이행기간 산정시 분양대행 기간의 제외 적용 (안 제3조)**
 - 분양대행 요청일부터 지자체 회신일까지, 지자체 수용일 다음날부터 분양대행 종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은 설치의무 이행기간(3년) 산정에서 제외
- ③ **설치의무자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 등 (안 제4조)**
 - 분양공고비(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사업설명회 개최비용 등
 - 지자체는 분양대행 종료 뿐 아니라 중지시에도 관련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자는 15일 이내 납부
- ④ **이행계획서 및 이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할 항목 (안 제5조)**
 - 이행계획서에는 부지 확보현황, 처리시설 설치계획, 분양 또는 매각 계획을 기재하고, 이행결과보고서에는 이행결과, 미이행시 그 사유와 이행계획 등을 기재
-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안 제6조)**
 - 기타 부과·징수 세부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문의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64, 팩스: 044-201-7376)

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3.11.15.
~12.26.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의 위반을 저감을 위해 위반 사실 공표제가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어 구체적인 공표 사항,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구체적 공표 항목 (안 제27조의2제1항)**
 - 1)사업자의 종류, 2)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3)구체적 위반행위, 4)처분내용(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처분일

② 공표대상 결정 절차

- 법 제5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안 제27조의2제2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 (안 제27조의2제5항)

③ 공표 방식 및 기간 (안 제27조의2제3항)

- 환경부 및 지자체의 누리집에 1년간 공개, 연 1회 공표

④ 보고체계 마련 등

- 특별·광역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위반사항을 취합하여 환경부로 보고 (안 제27조의2제4항)
- 지자체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하도록 업무 위탁 (안 제29조제1항제3호)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안 제6조)

- 기타 부과·징수 세부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 문의처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화: 044-201-7364, 팩스: 044-201-7376)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1.13.
~12.26.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신축 허용,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도로변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 (안 제40조제10항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②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가능한 정원 기준 명확화 (안 별표1제1호아목)

- 「수목원정원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 정원의 종류를 조성주체 기준으로 변경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내 건축물 신축시 진입로 설치 규제 완화 (안 제14조제9호)

-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구역 지정 전 건축된 주택·근생시설 등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구역 내 토지에 진입로 설치를 허용

- ④ **농업인용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안 제19조제7의3)**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신고행위로 허용
- ⑤ **개발제한구역 내 제설시설 설치범위 확대 (안 별표1 제2호다목)**
 - 구역 내 일반국도·지방도 뿐만 아니라 고속국도, 광역시도 등을 포함한 간선도로에 불가피한 경우 제설시설의 설치를 허용
- ⑥ **이축·재축한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허용 (안 별표1 제5호다목 및 라목)**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생시설이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허용
- ⑦ **음식점 등의 부대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안 별표1 제5호라목)**
 - 휴게음식점 부지와 구거, 소로 등 소규모 선형시설로 분리된 토지에도 부대 주차장 설치를 일부 허용(현재는 경계가 맞닿은 토지에만 설치가 가능)
- ⑧ **물납허가 관련 위임규정 보완 (안 제40조제4항제2호)**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부담금의 '물납 허용' 지자체 위임사무에 포함
- ⑨ **유효기간 만료조문 삭제 등 (안 별표1 제1호바목가 및 제5호아목라)**
 - 실내체육관 관련 조문위치 변경사항 반영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주체 관련 유효기간 만료 조문을 삭제
- ⑩ **양성화된 군사시설의 형질변경 수반 증축 허용 (안 별표3 제57호)**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형질변경 면적 범위 내에서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라 양성화 군사시설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증축을 허용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5, 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3.11.13.
~12.26.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이축대지의 이력관리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에 따른 신청서류 서식개정 등 (안 제16조 및 별지 제3호, 제4호)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 제출처 및 관련 서식 변경
- ② 이축대지 이력관리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개정 (안 별지 제2호)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이축 또는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사항도 함께 기재토록 서식 작성요령에 관련 내용 추가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5, 팩스: 044-201-5574)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2023.11.15.
~12.05.

현대 디지털 경제의 각종 특성이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방식을 현대화하는 한편, 그간의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 경향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내실있는 기업결합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간이심사 기준 정비 (안 III. 개정)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보완성 또는 대체성 없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혼합결합하려는 경우로서, 결합되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에 월 평균 500만명 이상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일반심사 대상으로 규정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존 유한책임사원이 PE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다른 LP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규정
- ② 시장획정 기준 정비 (안 IV. 개정)
 - 기업결합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가 상이한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사업자인 경우, 그 집단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이른바 ‘다면시장’)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 당사회사가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격 변화가 아닌 품질 악화 등에 따른 수요대체를 확인하여 시장을 획정할 수 있음을 규정
 - 혁신시장 획정 사례를 추가
- ③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정비 (안 V. 개정)
 - 당사회사가 명목상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품질 악화 등의 비가격적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
 - 당사회사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경우,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네트워크 효과를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

- 혼합결합의 경쟁제한 효과가 끼워팔기/결합판매 중심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정비
- 경쟁제한성 판단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는 각종 직접 증거들을 예시

④ **효율성 증대효과 판단기준 보완 (안 VI. 개정)**

- 지털 경제에서 기업결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효율성 증대효과 예시를 보강
- 기업결합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증가가 기존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기업결합 결과 혁신적 서비스 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 스타트업들이 결합되는 경우 스타트업에 투입된 자본이 회수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전화: 044-200-4934, 팩스: 044-200-4976\)](tel:044-200-4934)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11-16 제출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 삭제,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92조 등)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55인)

2023-11-14 발의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횡재성 초과수익을 누리는 반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는 이에 따른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

이미 영국·스페인·이탈리아·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하였거나 도입 예정 중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을 사회에 재분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후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음. 또한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황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 신설)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2023-11-15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 대금이 큰 경우에는 일부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신용카드 결제액에 상한을 두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이에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9조제1항 및 제70조제4항)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2023-11-16 발의

디지털 시장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 권익을 해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전통적 시장에 적용하고 있는 기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체계를 디지털 시장에 적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U, 미국 등 주요국들도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제를 진행 중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목적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 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이용자 간 또는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이용자 간의 재화·용역·정보·콘텐츠 등의 제공·이용·거래·교환 등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하고 그 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등 주요 용어에 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③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발행주식의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30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고,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가 5만 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안 제5조)
- ④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조사 결과 신고대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안 제6조)
- ⑤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를 목록화하여 관리하도록 함 (안 제7조)
- ⑥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대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함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⑦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안 제15조)
- ⑧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해마다 자신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사업개요, 불만처리 현황, 정보공시 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16조)
- 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지정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 및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실태파악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목적의 시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 ⑩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권고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 ⑪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 확산이 우려되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장지배적 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

- ⑫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
- 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안 제30조)
- ⑭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문기구인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할 때 또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때,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안 제31조)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5인)

2023-11-16 발의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함에도 하도급계약의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음

이에 고질적인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3조의4제1항 후단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외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11-13 제출

외환시장의 위기에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외환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등의 의무 부과 외에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하면 그 권고의 대상자에게 이행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대응수단을 다변화하는 한편,

수출기업 등에 대해 환전 등 외국환거래와 관련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對)고객외국환중개업에 대한 인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제6조제1항, 제6조제6항 신설, 제9조, 제10조의2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형의원 등 10인)

2023-11-13 발의

현재 상속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주식에 대한 상속세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러한 주식에 대한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가의 기업하려는 의지를 저해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기업자산의 해외유출과 투자 감소를 야기하고 있음.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주식에 대한 상속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주권상장법인과 적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시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인이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시점으로 과세를 이연하여 기업을 계속 성실히 경영하게 하고, 아울러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여 외국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이 본 제도의 취지임

상속되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가 이연되면 기업가는 상속세를 이연받기 위해 계속 기업을 성실히 국내에서 운용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게 되고, 일반 주식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 투자하려는 투자심리가 생겨 주식시장의 지수가 높아져 경제전반의 수준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아울러, 비상장법인이라도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이 큰 기업들은 과세이연의 범위 내에 포함시켜 국가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안 제30조의8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3인)

2023-11-13 발의

현행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 및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 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의 이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2023-11-15 발의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특히 현 정부는 ‘미래먹거리 신 성장 국가전략’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할 분야로 디스플레이, 첨단 방산 등과 함께 ‘콘텐츠’ 분야를 선정할 만큼 콘텐츠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육성을 강조해 왔음.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사실상 유일한 지원 제도인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은 약 25%에 이르는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3~10% 수준으로 책정되어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거대 글로벌OTT사들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로 인해 제작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사업자들의 재정 적자가 심화되며 경영 위기를 넘어 한국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위협 받고 있어 생태계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해외 주요 경쟁국 및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안 제25조의6)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023-11-16 발의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그런데 이미 배출·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의5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등 15인)

2023-11-14 발의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은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과 달리,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의2제1항, 안 제75조제1항제5호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2023-11-15 발의

현행법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적정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및 제27조제1항제9호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2023-11-14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등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테러 유관기관인 軍,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58조의3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의원 등 10인)

2023-11-15 발의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게시·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에 따른 여론 왜곡 및 사회 갈등 심화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된 지 오래임

특히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가짜정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음

이에 포털, 동영상·소셜미디어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동영상을 활용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허위 내용의 정보 및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지능정보사회윤리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4조, 제44조의7 및 제70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3-11-16 제출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11 신설, 제88조제4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2023-11-14 발의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음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 청년 창업 및 취업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 산업단지 내 악취·오염,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산단 입주를 꺼리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산업단지 환경개선 실태조사 및 환경개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첨단·신산업 기업 입주와 산단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7항제6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2023-11-14 발의

최근 방역로봇, 자율주행로봇, 서빙로봇 등 지능형 로봇(AI 로봇)이 정부·공공기관 및 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AI로봇 중 중국산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로봇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 지난해 소비자단체 조사결과 응답자 88.7%가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유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제품 확인 결과 촬영된 영상을 해외로 전송하거나 암호화 미적용 등 취약점이 드러난 바 있음

이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보급되는 AI로봇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0인)

2023-11-15 발의

현행법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그 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의 이의신청 제도는 심사관의 주관적, 자의적 판단이나 실수 등에 대하여 공중심사기능을 도입함으로써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고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등록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표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 여부가 결정되어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상표출원의 특성상 이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상품출시와 동시에 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고, 상표 브랜드는 유행성이 강하여 그 순환주기가 매우 짧아 더욱이 신속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의원 등 10인)

2023-11-15 발의

소위 “짜퉁”이라 불리는 위조품은 시장 등에서 암암리에 판매되어 왔으나,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표분야 선진 5개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보호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

예전과 달리 위조품의 품질이 매우 높아져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고, 관련 법령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위조상품이 많아지면서 「상표법」을 위반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위조품이 제작·유통되면서,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보호하는 관계 당국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음

이에 따라 특허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의 판매·유통 근절을 위하여 ‘재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특허청의 요청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가 없어 실효적인 위조품 판매·유통 차단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특허청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판매 중인 상품의 위반사항을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조품 판매·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특허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8조의2제1항 신설)
- ② 특허청장은 모니터링 결과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8조의2제2항 신설)
- ③ 특허청장의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상품판매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108조의2제3항 신설)
- ④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상품판매자는 해당 상품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특허청장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8조의2제4항 신설)
- ⑤ 특허청장은 상품판매자의 소명에 따라 해당 상품의 판매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조치의 취소를 요청하도록 함 (안 제108조의2제5항 신설)
- ⑥ 특허청장의 모니터링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8조의3 신설)
- ⑦ 특허청장의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7조제1항제4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2023-11-16 발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CCS) 기술은 지난 1970년대부터 북미 유전에서 원유회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중(地中) 저장 기술로 발전하였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 Utilization,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및 감축 인센티브 제도가 발달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발전되어 현재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가 활발하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CCUS) 기술이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CCUS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요국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의 상업용 CCUS 시설이 운영 중이고 500개 이상의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음

우리나라도 CCUS를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여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따라 CCUS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120만톤 및 2050년까지 연간 최대 8,52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CCUS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CCUS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CCUS를 통한 탄소 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에 저장하거나 이산화탄소의 산업적·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규정함 (안 제1조)
- ② 포집, 수송, 저장, 활용, 이산화탄소수송관 및 이산화탄소저장소를 정의함 (안 제2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 ④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 제7조 및 제8조)
- ⑤ 이산화탄소 수송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송관 설치자 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⑥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국내의 육상 또는 해양의 지중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그 선정의 취소, 이산화탄소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⑦ 국내의 육상 또는 해양에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장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하되, 거짓으로 허가받은 자 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규정하고, 저장사업자는 이산화탄소저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에 불순물이 포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안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 ⑧ 국외 이산화탄소 저장의 관리는 해당 국가와의 협약 등을 따르되,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안 제29조)

- ⑨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인증,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과 금융·세제 등의 지원, 기술 표준화 등을 규정함 (안 제30조부터 제42조까지)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등 11인)

2023-11-13 발의

현행법령은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하여금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등을 적도록 하고 있으나,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기재사항에서 빠져 있음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을 한번에 처방함으로써 환자가 조제약을 상비약처럼 구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제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기한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가 변질되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조제약을 복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약제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2023-11-14 발의

최근 택시운수종사자 감소에 따른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 바 있으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안정적인 택시공급을 위해서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재정적 지원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택시는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현행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1항제4호의3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2023-11-14 발의

최근 드론산업 육성, 활용을 위해 드론 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실제 공기업의 업무 중 감시·관찰·훈련 등의 업무에서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 등에서 도입, 활용하고 있는 드론 중 중국산 드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드론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음

미국, 인도,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보안을 위해 중국산 드론 또는 중국산 부품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중국산 드론의 보안이 취약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조 단서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4인)

2023-11-15 발의

건설산업은 원·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건설노동시장의 경우에는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하고 근로자의 경력 및 전문성에 따른 보상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구인난이 심화하고 숙련된 기능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임

이에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적절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여 직접시공을 유도하는 등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함 (안 제22조제7항)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38조의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임금을 산정하여 고시하되, 적정임금은 해당 직종 및 기능별 임금의 평균값·중위값 및 최빈값 중 하나의 값으로 하도록 함 (안 제38조의6제1항 및 제2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노무비 산정을 위해 건설사업자 및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노무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6제3항 및 제4항)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안 38조의7제1항)
-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도록 함 (안 38조의7제2항)
- ⑦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또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를 반영하도록 함 (안 38조의7제3항)
- ⑧ 적정임금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1조제4호)

III. 국회 주요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11/23(목) 10:00	제410회 국회(임사회) 제12차 본회의 - 안건 심의

2.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구분	일시	내용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	11/20(월) 10:00	- 예산안 등 심사
	예산안 등 조정소위	11/21(화) 10:00	- 예산안 등 심사
	예산안 등 조정소위	11/22(수) 10:00	- 예산안 등 심사
	예산안 등 조정소위	11/23(목) 10:00	- 예산안 등 심사
	예산안 등 조정소위	11/24(금) 10:00	- 예산안 등 심사
법사위	법안2소위	11/21(화) 14:00	- 타위법 심사
	전체회의	11/22(수) 14:00	- 고유법 의결 및 상정, 타위법 심사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11/21(화) 10:00	- 타위법 심사
	법안심사제2소위	11/23(목) 10:00	- 고유법 의결 및 상정, 타위법 심사
기재위	조세소위	11/20(월) 10:00	- 법안 심사
	경제재정소위	11/21(화) 10:00	- 법안 심사
	조세소위	11/22(수) 10:00	- 법안 심사
	경제재정소위	11/23(목) 10:00	- 법안 심사
	조세소위	11/24(금) 10:00	- 법안 심사
교육위	예결소위	11/21(화) 10:00	- 예산안 등 심사
	전체회의	11/21(화) 15:00	- 예산안 등 의결, 법안 상정
	법안소위	11/22(수) 14:30	- 법안 심사
	법안소위	11/23(목) 09:30	- 법안 심사
외통위	법안소위	11/22(수) 14: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23(목) 10:00	- 법안 의결
국방위	전체회의	11/23(목) 11:00	- 예정
	법안소위	11/21(화) 14:00	- 법안 심사

행안위	법안2소위	11/21(화) 10:00	- 법안 심사
	법안1소위	11/22(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23(목) 10:00	- 법안 의결, 지방세관계법 상정
문체위	전체회의	11/20(월) 15:00	- 예산안 등 의결
	문화예술법안소위	11/22(수) 14:00	- 법안 심사
농해수위	전체회의	11/23(목) 09:30	- 법안 상정 및 의결
	농림축산식품 법안소위	11/22(수) 10:00	- 법안 심사
산자중기위	중소기업소위	11/21(화) 10:00	- 법안 심사
	산업특허소위	11/22(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23(목) 10:00	- 법안 의결
복지위	제2법안소위	11/21(화) 10:00	- 법안 심사
	제1법안소위	11/23(목)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23(목) 10:00	-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법안 의결
환노위	환경법안소위	11/21(화) 10:00	- 법안 심사
	고용노동법안소위	11/22(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23(목) 10:00	- 법안 의결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11/21(화) 10:00	- 법안 심사
	국토법안소위	11/22(수) 10:00	- 법안 심사
정보위	전체회의	11/23(목) 10:30	- 예산안 등 상정
	전체회의	11/24(금) 10:00	- 예산안 등 의결
	예결소위	11/23(목) 11:00	- 예산안 등 심사
첨단전략 산업특위	전체회의	11/20(월) 14:00	- 위원장(유의동) 사임의 건, 위원장 선임의 건 -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전력·용수 공급계획 보고
기후위기특위	전체회의	11/22(수) 10:00	- 2024년도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안 등 보고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발간 등)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20(월) 14:00	AI가 바꿀 국방의 미래 모습과 대응 전략	김종민·성일종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20(월) 14:00	수송 부문 2030 NDC 달성 가능한가?: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의 필요성과 한계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1/20(월) 14:00	위기의 교육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 보다	국회공정사회포럼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0(월) 14:00	한국 정치 양성평등 어디까지 왔나?	권영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1(화) 10:00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질환의 국가적 예방 필요성에 대한 국회 정책 토론회	최영희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1/21(화) 14:00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강민정·강은미· 박용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1(화) 14:00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	권인숙·김의겸· 장혜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21(화) 15:00	상가임대차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박주민·배준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1/21(화) 19:00	2023년 하반기 미래의제 융합포럼 5차 - 지구 어머니의 생태 부활을 위한 새로운 인간형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1/22(수) 10:00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 상호금융 업무혁신을 통한 미래 발전방향	이명수·전혜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2(수) 10:00	미완의 검찰개혁,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과제	강민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1/22(수) 14:00	사구의 날 제정과 국립사구센터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서삼석 의원실, (사)섬연구소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1/22(수) 15:00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강성희 의원실, 민주노총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11/22(수) 15:30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한정애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23(목) 09:30	수확기 이후 쌀값 안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소병훈·이달곤· 어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1/23(목) 10:00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	김희곤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23(목) 14:00	대학 강사의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토론회	강민정·이은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11/24(금) 09:30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	신동근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24(금) 10:00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논의	남인순·강기윤· 고영인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24(금) 10:00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김성환·우원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1/24(금) 10:00	헌법불합치 4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묻다	고영인·남인순· 권인숙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1/24(금) 14:00	한국형 은퇴자마을(도시) 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이종배·이헌승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11/21(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236호 발간 - 미국의 대중국 투자규제 입법례	국회도서관	
	11/22(수)	「금주의 서평」 제654호 발간 - 도서명 : 1%를 보는 눈 - 저 자 : 크리스 존스		
	11/22(수)	「Data & Law」 2023-11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병역자원		
	11/22(수)	「현안, 외국에선?」 71호 발간 - 2050년을 대비한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		
	11/20(월)	「NABO Focus」 제66호 발간 -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디지털 개혁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국회예산정책처	
	11/21(화)	「NABO Focus」 제67호 발간 - 최근 세수오차 발생원인과 2024년 국세수입 전망		
	11/22(수)	「예산춘추」 통권 제72호 발간		
	11/22(수)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11/20(월)	「Futures Brief」 제23-19호 발간 - 일본 「성육기본법」(成育基本法) 관련 소아의료 체계 소개 및 의의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09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13(월) 10:00	통합재가서비스 제도의 성과와 발전과제 정책 토론회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3(월) 13:30	미래 DX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RISE기반 자산학 협력 활성화 방안	김성원 의원실, DX거버넌스협의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4(화) 10:00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김미애 의원실, 국무조정실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14(화) 13:30	우리기업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와 수주 확대를 위한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현주소 및 향후 발전방안 토론회	민홍철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14(화) 14:00	건축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회토론회	조정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4(화) 14:00	국가전략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RA 직접환급제 (direct pay) 도입 방안 토론회	김상훈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14(화) 14:00	그린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시장 활성화 토론회	이용빈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1/14(화) 14:00	항공보안 현재 상황진단과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맹성규·김두관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15(수) 10:00	간병노동자의 건강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노동권 보호방안 국회 토론회	우원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11/15(수) 14:0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운송수단 보급추진방안 정책 토론회	김성원·이주환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6(목) 10:00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성과공유 토론회	김철민·이태규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16(목) 14:00	장애인 운전재활·교육 전달체계 활성화 토론회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11/13(월)	「팩트북」 제105호(2023-5호) 발간 - 초거대 AI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11/14(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235호(2023-23호) 발간 - 독일의 소음지도 관련 입법례		
	11/15(수)	「World&Law」 제2023-21호 발간 - 의료 데이터, 활용도 하고! 보안도 지키고!		

	11/15(수)	「금주의 서평」 제653호 발간 - 도서명 : 플립 싱킹(Flip Thinking) - 저 자 : 베르톨트 건스터		
	11/17(금)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11/13(월)	「Futures Brief」 제23-18호 발간 - 국제 지수로 본 한국 젠더 관계의 성격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11.13.~11.19.)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13(월)	기업지배구조	[주주경영권분쟁팀 뉴스레터] 3. 주주총회 당일 진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위임장 심사 관련 쟁점
11/16(목)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된 상표가 부착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제조자 표시가 있어도 상표권자가 제조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유럽사법재판소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백운일 | 전문위원

[이메일주소](#)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